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15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2016. 12. 21. 한 이행강제금 5,716,640원의 부과처분과 2017. 6. 16. 한 이행강제금 6,044,9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 부분, 피고의 [redacted]구 C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 면적 취소 및 위반 면적 재산정 청구 부분, 피고가 2017. 1. 11. 선정자 B에게 한 취득세 609,7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 2016. 12. 21. 한 이행강제금 5,716,640원의 부과처분과 2017. 6. 16. 한 이행강제금 6,044,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25. 한 이행강제금 6,325,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redacted]구 C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 면적을 취소하고 그 면적을 재산정한다. 피고가 2017. 1. 11. 선정자에게 한 취득세 609,73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redacted]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불법건축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자 2016. 7. 14. 이 사건 건물 현장에 가서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내지 4층(위반 면적 : 1층 14.59㎡, 2, 3, 4층 각 13.53㎡)이 무단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무단증축된 부분을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원고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선정자에게 2016. 7. 25.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6. 9. 9. 위 증축 부분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촉구를 하였으며, 2016. 10. 31.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6. 12. 21. 이행강제금 5,716,6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에도 원고 및 선정자가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하지 않자 피고는 시정명령, 시정촉구,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7. 6. 16. 원고 및 선

1)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취득세 등) 및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의 합계액인 609,73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정자에게 이행강제금 6,044,9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2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증축 부분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시정명령, 시정촉구,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8. 1. 2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6,325,820원(= 이 사건 증축 부분 시가표준액 18,073,790원 × 50/100 × 70/100)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11. 선정자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의 2016년 시가표준액을 16,333,280원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609,7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 및 선정자는 2018. 4. 30.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해 위반 면적을 재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25.에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에게 2016. 12. 21.과 2017. 6. 16.에 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며, 피고가 2017. 1. 11. 선정자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redacted]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9. 원고 및 선정자의 심판청구 중 피고가 2018. 1. 25.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들은 각하한다고 재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에게 한 2016. 12. 21.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201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6. 16.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는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한 2016. 12. 21.자 및 2017. 6. 16.자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30.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및 선정자가 피고의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 1년이 도과한 후인 2019. 2. 14.에 이르러서야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원고 및 선정자가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제소기간 180일이 도과한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이상 원고 및 선정자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가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6. 12. 21.자 및 2017. 6. 16.자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에 원고 및 선정자에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에게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는 물론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불복방법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반 면적 취소 및 면적 재산정 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증축 부분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위반 면적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반 면적을 산정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의 위반 면적 산정만으로는 직접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고로서는 위반 면적 산정과 관련한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전제로 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위반 면적을 취소한다"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바(대법원 1992. 2. 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중 "피고가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위반 면적을 재산정한다"는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9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그 조세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고 난 뒤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선정자가 2018. 4. 30. [redacted]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가 2017. 1. 11. 선정자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선정자는 늦어도 2018. 4. 30.경에는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선정자는 2018. 4. 30.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2. 14.에 이르러서야 위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선정자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조세심판원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redacted]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선정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선정자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 25.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 25.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2018. 1. 25.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고지를 하지 않아 원고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회를 박탈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증축 부분 공사를 하게 된 것은 피고가 시공을 감독한 D경로당의 신축 공사 과정에서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고가 무단증축 부분으로 지적한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발코니는 기존에 이 사건 건물의 발코니로서 허가를 받은 부분이다. 그리고 피고가 무단증축 부분 중 2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이라고 특정한 부분은 창고 형태의 다락에 불과하여 무단증축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무단증축 부분의 용도를 주택이 아닌 창고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2. 21.과 2017. 6. 16.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선정자와 관리자인 원고에게 연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가, 2018. 1. 25.에는 관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는 오류를 범했다.

5)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1년에 1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 피고는 연 2회 원고에게 불법건축물에 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형평성에 반한다.

6) 선정자가 2016.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한 건축신고(증축)를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부당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가 2018. 1. 25.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원고에게 불복방법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을 제4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2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redacted]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는 물론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redacted]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있다"는 취지의 불복방법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증축하게 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시공을 감독한 D 경로당의 신축 공사 과정에서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생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축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무단증축 부분의 면적이나 용도를 잘못 특정하였는지 여부

가) 발코니에 관한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5. 11.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위 국토교통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 침실 ·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준공 후 발코니를 구조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주는 위 국토교통부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고 발코니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부분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발코니에 관하여 허가를 받고 확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허가를 받아 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축했다고 주장하는 발코니 부분은 기존 건축물의 아래층과의 건축면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공간으로서 원고가 외부에 개방되어 있는 바닥 형태의 베란다에 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증축한 부분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발코니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합법적으로 발코니 부분을 증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2층이라고 특정한 부분은 창고 형태의 다락에 불과하여 무단증축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다락은 층고가 1.5m 이하인 것만 해당하는데, 다락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그런데 을 제1호증의 2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2층의 층고가 2m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위 건축법 시행령 규정상 다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무단증축 부분에 적용될 용도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정한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2)]'의 2. 적용지수, 나. 용도지수의 적용 항목의 적용요령 제6)항에서 "창고시설의 '창고'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창고'로 등재되어 있고, 특정 용도의 범위 안에 포함

2)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각 규정들은 일정한 유형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위 건축법 및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그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그중 증·개축 건물과 대수선 건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물품보관용으로 사용되는 등 해당 건물이 독립되어 일반적 창고의 역할인 물품보관 등의 기능을 하는 것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영상 및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 점, ② 이 사건 건물 중 무단증축된 부분이 이 사건 건물과 독립되어 일반적인 창고의 역할인 물품보관 등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인 이 사건 건물과 연결되어 일부분이 취사시설, 빨래 건조시설 등 물품 보관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무단증축된 부분에 적용될 용도는 '창고'가 아닌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원고에게 무단증축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로서 위 건축법 규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 '관리자'로서 건축주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법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원고에게 2018. 1. 25.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어렵다.

5) 피고가 연 2회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형평성에 반하는지 여부

구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서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건축법 제80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72조에서 구 건축법 제80조 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2회 이내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연 2회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연 1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일부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1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피고가 연 2회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형평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선정자가 2016.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에 관한 건축신고를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부당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가 2016.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2층 부분과 관련하여 건축신고를 접수한 사실, 피고가 구비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선정자의 위 건축신고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선정자가 보완하지 아니하여 2016. 5. 9. 피고가 선정자의 위 건축신고를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선정자가 피고의 위 건축신고 반려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위 건축신고 반려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료도 없다.

이상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정자가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가 반려되었고, 그 건축신고 반려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선정자가 이 사건 증축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라도 적법한 건축신고를 마쳤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에게 2016. 12. 21.과 2017. 6. 16.에 한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반 면적 취소 및 재산정을 구하는 부분, 피고가 2017. 1. 11. 선정자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피고가 2018. 1. 25.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이필복

판사 목명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선 정 자 목 록

1. A(선정당사자)

2. B.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가감산율)

▣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1-26

▣ 구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2018. 12. 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② 법 제80조 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년에 2회 이내로 하고,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5. 11.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

제12조(준공후 변경)

① 건축주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1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2. 적용지수

나. 용도지수의 적용

<적용요령>

6) 창고시설의 '창고'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창고'로 등재되어 있고, 특정 용도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물품보관용으로 사용되는 등 해당 건물이 독립되어 일반적 창고의 역할인 물품보관 등의 기능을 하는 것만 해당한다. 끝.